

과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58
----------	-------------

제안년월일 : 2003년 9월 29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지난 2003. 5. 1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기,
- 동 개정조례안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 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사비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정하여 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2년)를 보장하고자 함.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신설)</u>	부 칙 ①-----.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